

대전고등법원 2022. 12. 1 선고 2022나139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 2022. 12. 1 선고 2022나13986 판결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 7. 20 선고 2021가합2055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박민호

피고, 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훈진

변론 종결2022. 10. 13.

판결 선고2022. 12. 1.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 7. 20. 선고 2021가합2055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1. 31.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원부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 8. 13. 접수 제212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2017. 1. 31. 자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 8. 13. 접수 제212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2017. 1.경 신탁계약 소멸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 8. 13. 접수 제212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2017. 1. 31. 자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 8. 13. 접수 제212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2017. 1.경 신탁계약 소멸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사해행위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13.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C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사해행위취소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제출한 항소장에 대해서는 이를 각하하는 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3.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기재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4. 추가판단' 기재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9, 10행 중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접수 2015. 8. 13. 접수"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 8. 13. 접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4면 글상자 안 제12행을 "(④항 생략) ⑤ 우선수익자는 을의 사전 동의 없이는 신탁기간 중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명의 변경하거나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 등 기타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로 고친다.

4. 추가판단

원고는 '우선수익자 G가 이 사건 신탁변경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공매신청을 한 후 피고가 해당 절차를 거쳐 제3자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수익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매매대금 지급일자가 2022. 9. 말경으로 지정되었다는 소문을 접하고 있는바, 우선수익자 G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채권을 모두 회수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하나, G가 채권을 모두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① 원고는, "G는 2020. 12. 24.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와 사이에 G의 I에 대한 6,141,201,570원의 채권(= 대출금 4,740,000,000원 + 이자 1,401,201,570원)을 P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에 따라 G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서의 권리를 상실하였고, G가 위 채권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P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 지위를 이전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의 권리인 담보권은 소멸하였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변론재개 신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의 2022. 11. 22. 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G와 P 사이의 2020. 12. 24. 자 채권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G가 2020. 12. 24. P에게 I에 대한 5,921,609,960원의 채권을 양도하면서 위 채권의 담보권인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을 함께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신탁계약 중 기본계약 제7조 제5항이 우선수익자 지위의 양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위 채권양수도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가 G에서 P로 변경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② 또한 원고는 2순위 우선수익자 H의 채권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변론재개 신청을 하고 있으나,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2순위 우선수익자 H의 채권이 허위라 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재판장판사한소영

판사박진환

판사김병식

별지

1)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한한다.